

#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09년 7월 14일(화) 14:00~17:00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부일정 P·r·o·g·r·a·m

## ▶ 사회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_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Session1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14:10~14:30      발제 \_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 Session2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14:30~14:50      발제 \_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Session3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14:50~15:10      발제 \_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15:10~15:20      휴식

### Session4 종합토론

15:20~16:20      지정토론 (각10분)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시인)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화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16:20~16:30      휴식

16:30~17: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00              폐회



# 목 차 C·o·n·t·e·n·t·s

## Session1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5

## Session2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27

## Session3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49

## Session4 종합토론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75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79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시인) 87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89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화가) 93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95



## Session1

#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예술인 복지모델에 적정 수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다면, 거기에 가입하는 개별 예술인의 가입 자격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입 대상 범위도 분명하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인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처럼 답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술의 범위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듯 예술인의 범위 또한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조건에서 예술인, 직업으로서의 예술인의 범위를 한정해 본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 1.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대상 범위

### 가. 장르별 접근과 예술인 복지모델 대상 범위

예술 장르는 예술 활동의 산물인 작품의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분류체계이다. 물론 활동 과정의 특성 또한 반영되지만 주된 기준은 표현의 수단이나 매체이다. 문자 및 언어를 다량한 지면(온라인 지면 포함)을 통해서 존재화 하고 서점이나 도서관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문학이라면, 캔버스 위에 그려진 그림은 오리지널 작품이 전시장이나 개인 소장가의 손을 건너다니면서 향유된다. 연극은 무대(마당을 포함)에서 배우의 실연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화에서 배우의 실연은 다른 풍경이나 사물과 함께 카메라에 포착된 후 편집과 복제를 거쳐 스크린(다른 재현 기구 포함)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텍스트의 원본성과 복제성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문학과 영화는 복제가 가능하고 또 그래서 산업화의 영역에 가깝다. 반면 연극과 미술은 원본성을 유지하는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화에 취약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장르별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 또는 그 산물이 예술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을 예술의 영역으로 보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근대의 산물인 사진이나 영화, 대중가요 등도 이미 예술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예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을 정의하면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의 10개 장르를 열거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합리적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예술계 또는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장르 체계이자 예술의 범위로 현실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대상을 논의할 때 예술의 범위는 일단 문예진흥법상 10개 장르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10개 장르는 잠정적이거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예술의 장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문학	문학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시나리오, 드라마극본	
시각예술	미술	회화, 조각, 설치미술	
	사진	사진	
	건축	건축	
	만화	극만화, 카툰	
	디자인	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북디자인, 웹디자인	
	공예	목공예, 석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공연예술	연극	연극, 뮤지컬, 마임, 인형극	
	음악	기악, 성악, 오페라, 합창	
	무용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국악	국악, 전통예능	
	극예	극예, 마술	*공연법
	비보이	비보이	
	넌버벌 퍼포먼스	마셜아트, 타악퍼포먼스	
	총체극	총체극	
	이벤트	패션쇼	
대중예술	영화	영화	
	연예	대중음악, 텔레비전드라마, 라디오드라마, 코미디, 개그	

<표1>은 10개 장르와 만화, 디자인, 공예, 미디어아트, 곡예, 비보이, 너머벌 퍼포먼스, 총체극 등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르를 생각나는 대로 첨가하여 본 것이다. 이 가운데 곡예는 공연법에 의해 ‘공연 장르’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그 외는 다른 장르와 병렬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위로 포괄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과연 예술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연예’ 장르의 경우 그 주된 활동 공간이 방송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이나 영화와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 활용 형태는 다른 장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연예’라는 용어 대신 ‘방송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구분이 될 수도 있겠다.

한편 법에 의한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새롭게 생겨나는 예술 장르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예진흥법 제2조 미술의 경우 ‘응용미술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디자인과 공예는 예술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공예는 산업과 분리할 수 없고, 그렇다면 어느 부분은 예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어느 부분은 산업의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흔히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의 일부로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술의 영역에 해당하고, 도자기 공장 디자인실에 근무하면서 사용 종속 관계 속에서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면 이를 ‘예술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산업화의 주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및 공예 활동만을 예술로 규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건축의 경우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건축물 자체는 예술로 인정하지만 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예술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 대상과 소재가 무엇이든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 활동은 모두 예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몇 가지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예술계 내부의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 사회적 합의가 명시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다. 하나의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의 일부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정도의 상황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외국의 예술인 통계를 보면 디자인과 공예를 예술 분야에서 다루는 사례가 많다. 또 문예진흥법 제2조에 있는 응용미술 조항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디자인과 공예를 예술의 범주에 넣는 것을 원칙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화나 곡예 등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문제를 예술인 복지모델과 관련지어 바라본다면, 우선 10개 장르를 대상 범위로 하여 출범을 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직업별 접근과 예술인 복지모델 대상 범위

예술 활동 과정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향유하는 과정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 이 구조에서 예술인은 주로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제반 과정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 즉 직무(job) 내용과 직능(skill)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직업(occupation)이다. 직업은 개인별로 나누어지는데, 연극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극작가, 연극연출가, 연극배우, 무대감독, 무대미술가,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이너, 무대기계조직원, 무대조명기구조직원, 무대음향기구조직원, 무대의상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무대의상 및 소품 관리원, 공연기획자, 마케터, 하우스매니저, 예산 및 회계 담당자 등등이 있다. 그 외 직접적으로 연극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연극평론가, 연극교육가 등도 있다.

여기에서 예술인의 범주에 드는 인력은 가장 협의로 보면 극작가와 연출가, 배우라고 할 수 있다. 극작가의 경우를 창작예술가라 하고, 연출가와 배우를 실연예술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의 직군은 기획 및 경영 지원 인력, 무대 기술 지원 인력, 행정 지원 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예술인’ 범주에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무대미술가나 무대조명디자이너, 무대음향디자이너, 무대의상디자이너 등은 실제 연극 작품의 예술적 창조에 참여하므로 창조예술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제작 현실에서 무대미술가를 제외하면 기구조작 업무와 디자인 업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방향에서 ‘디자이너’의 경우 그 직무의 성격상 ‘예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를 제외한 지원 인력을 예술인이 아니라고 규정한다면, 이들은 예술인 복지모델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공연예술의 경우처럼 작품 제작 과정에 밀착되어 있는 제작 지원 인력이 복지모델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애

기는 아니다. 그 대상 여부는 복지모델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연예술 분야의 앙떼르미땅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공연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제도 가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연극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았지만 이를 예술 전체로 확대해 보면, 예술인은 작가나 화가, 작곡가처럼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해 내는 창작예술가와 배우나 연주가, 무용가처럼 창작예술가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을 재현하는 실연예술가의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독이나 연출가로서 작품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실연예술가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저작권법」 상 저작권자와 실연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 나름의 유용성이 있는 분류라 할 수 있다. 안무가와 같이 저작자의 기능도 하고 동시에 연출자와 유사한 실연자의 기능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무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 분류된다. 예술 작품의 제작 및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군을 예술인이라 정의할 때,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자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이다.

직업별 접근에서 또 하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을 예술인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현장에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보다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인력 가운데 대학 예술학과 교수는 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주된 직무지만, 예술 현장에서의 창작이나 실연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실제 주요한 예술계 흐름을 리드하고 있는 핵심 그룹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하고 예술인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고교 예술과목 교사는 교육에 주로 종사하고 창작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사설예능학원에서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이 숫자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이 그룹 또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다. 다음으로 예술계에서의 활동과 예술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 ‘예술 강사’라 불리는 그룹이 그들이다. 따라서 예술 교육에 종사한다 하여도 각각 하는 일과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일괄하여 논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예술 교육 종사인력을 예술인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예술인 복지 모델 가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장르 범위 설정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장르별 접근보다 직업별 접근을 하게 되면 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등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통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외국의 배우

조합과 같이 활동 공간이 무대이든 방송이든 스크린이든 연기자로서의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끼리 ‘동업자 조직’의 결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다.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범위(안)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예술의 범위 설정과 복지모델 프로그램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순히 논리나 개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입 범위 확정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장르에서는 문예진흥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한 10개 장르로, 직업에서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에 한정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면서, 대상 장르의 확장과 직군의 확장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면서 제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0개 장르 예술인을 ‘한국표준직업분류2007’에 기초하여 9개의 직업군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이 되는 전문 예술인(1)

번호	직업군	예시 직업	관련 장르	비고
1	작가 (2811)(2812)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 작가, 구성작가, 시나리오 작가, 코미디 작가, 문학 번역가, 영상 번역가(11)	문학, 미술, 영화, 연예	창작예술가
2	시각예술인 (2841)(2842) (2843)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4)	미술, 사진	창작예술가
3	건축가(23111)	건축사(1)	건축	창작예술가
4	작곡가 (28451)	작곡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국악 편곡가, 관현악 편곡가, 음악 각색가(6)	음악, 국악	창작예술가
5	감독 및 지휘자 (2831)(28451)	연극 연출가, 영화 감독, 방송드라마 프로듀서, 예술감독, 지휘자,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7)	연극, 음악, 국악, 영화, 연예	실연예술가
6	배우 (2832)	연극배우, 텔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보조연기자(8)	연극, 영화, 연예	실연예술가
7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2844)	국악인, 소리꾼, 국악 연주가, 전통 연극인, 전통 무용인(5)	국악	실연예술가
8	연주가 및 성악가 (28453)(2846)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합창단원(9)	음악	실연예술가
9	안무가 및 무용가(2847)	안무가, 발레 각색가, 무용가, 한국무용가, 발레무용가, 대중업소 무용수, 백댄서(7)	무용, 연예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계	9개	58개		

\*‘직업군’의 ( ) 안의 숫자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의 분류코드 번호임.

(세 자리는 소분류, 네 자리는 세분류, 다섯 자리는 세세분류임)

\*‘관련 장르’의 굵은 글씨는 문예진흥법 제2조에 열거된 10개 예술장르임.

다음으로 예술계 내부의 논의를 거쳐 가입 범위로 새롭게 포함시킬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디자인, 공예, 곡예, 만화 장르의 전문 예술인과 예술 교육에 종사하는 직업 등 7개 직업군(3개는 앞의 1단계 추진 대상 직업군과 중복), 28개 직업이 추출 가능하다.

<표 3>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이 되는 전문 예술인(2)

번호	직업군	예시 직업	관련 장르	비고
1	작가 (28119)	게임 시나리오 작가, 만화 스토리 작가(2)	만화	창작예술가
2	시각예술인 (28431)	만화가(1)	만화	창작예술가
3	디자이너 (285)	삽화가, 글자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10)	디자인	창작예술가
4	공예가 (791)	도자기 공예원, 종이 공예원, 목 공예원, 석 공예원, 금속 공예원, 보석 세공원(6)	공예	창작예술가
5	배우 및 모델 (28323)(28329)	모델, 스타트맨(2)	연예	실연예술가
6	기타 실연자 (2899)	곡예사, 마술사, 비보이(3)	곡예	실연예술가
7	예술교육가 (25117)(25127) (25215)(2544)	예능 교수, 예능 시간강사, 예능 교사, 예능 강사(4)	-	예술교육가
계	7개	28개		

\*‘직업군’의 ( ) 안의 숫자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의 분류코드 번호임.

(세 자리는 소분류, 네 자리는 세분류, 다섯 자리는 세세분류임)

\*‘관련 장르’의 굵은 글씨는 문예진흥법 제2조에 열거된 10개 예술장르임.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술인 복지모델에는 협의의 ‘전문 예술인’ 외에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군을 함께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술에 대한 조사 연구 인력, 예술 프로그램 기획 인력, 공연이나 전시 관련 기술 인력, 예술 단체 및 기관의 행정 인력 등이 모두 넓은 의미의 예술 생태계를 떠받치는 인력군이므로, 예술인 복지모델 구성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연예술이나 영화의 경우에는 기술 관련 스태프가 없으면 예술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예술분야 종사 인력이라 하면, 예술단체 관리자를 비롯하여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예술교육가를 기본으로 하되, 기술 스태프, 기획·경영 스태프, 행정 스태프, 그리고 기타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인력군이 될 것이다. 예술 작업 및 행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 스태프에는 공연 관련 기술인력이나 방송 및 영상 관련 기술인력, 그리고 전시관련 기술인력이 있다. 기획·경영 스태프에는 공연이나 전시 기획 및 경영 관리 인력이 있고, 행정 스태프에는 예술 단체 및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관리 인력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입장권의 예매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원, 공연이나 전시를 안내하는 안내원, 일반 사무원을 비롯하여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의 시설 관리 인력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인 이외의 지원 인력은 직무 내용이나 직능 수준에서 매우 다양하여 표준직업분류 체계 상 여러 층위에 걸쳐 산재해 있고, 또 그것이 예술 분야 직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표4>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광의의 예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는 15개의 직업을 추가로 추출해 본 것이다. 앞의 <표 2>과 <표 3>에 제시된 86개의 예시 직업에 이 15개의 직업을 추가하면 모두 101개의 예술분야 직업을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대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이 되는 예술 지원 인력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2459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24594 음악 및 미술 치료사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744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27442 예술품 중개인 및 경매사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28211 큐레이터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28312 기술감독
	2834 촬영기사	28340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28350 음향 및 녹음 기사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60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28371 조명기사
		28372 영상기사
	2839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28391 무대의상 관리원
		28392 소품 관리원
28393 방송·영화연출 보조원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22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39223 화랑 및 박물관 안내원
422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42242 특수 분장사
		42243 분장사
계		15개

※ 이 표에 제시된 직업 목록은 분류상 세세분류에 독자적인 직업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만 예시한 것이다. 예술 프로젝트 기획·경영 관련 스태프나 예술 행정 지원 인력은 예술 분야 중요 인력으로서 예술인 복지 모델의 주요 대상에 해당하지만, 표준직업분류상 다른 직업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예 : 27312 마케팅 전문가, 27332 홍보 전문가 등)

## 2.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 또는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대상을 제한한다 하여도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자격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엄격한 자격 기준 설정과 그 적용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자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예술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직원 또는 단원 등 고용관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는 해당 업체에서 일정기간의 근무경력을 충족하면 가입 자격을 얻는 것으로 설정하는 사업체별 접근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용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사업별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및 관련 스태프는 별도의 관정 기준 및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 가. 사업체 인증을 통한 가입 자격 부여

사업체별 접근 방식은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해당 사업체가 예술 산업체임을 인증하는 절차와 그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가 예술인 복지모델에 가입을 신청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사업체 인증 단계에서는 업체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 사항, 업태 및 업종, 설립 연도, 설립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등의 내용을 탑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대상 업체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단체 리스트에 등재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국세청 업종코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다. 소분류 '921.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 관련 산업'에 분류된 업종 가운데 세세분류 악극단(921402), 극단(921403), 일반영화제작(921502)은 공연 및 영화 제작업의 성격이므로 예술인 복지모델 대상이 되는 '예술 산업체'로 판정할 수 있다. 영화배급업(921100), 영화상영업(921200), 기타 예술관련 산업(921401), 공연장 운영업(921901)과 같은 유통업종의 경우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예술 사업체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예술계 내부의 합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가입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출판업이나 방송업은 전체 사업 가운데 예술 출판이나 예술 프로그램 제작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협의의 예술 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방송은 대중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주요 공간이지만, 실제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는 협의의 예술 활동 외에 비예술적 프로그램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업 자체를 '예술 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대중예술인'이라는 개인의 직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방송업 종사자 전체를 예술인 복지모델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양상은 출판업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서 문학은 온·오프라인 출판사 및 서점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출판사나 서점을 문학의 생산 및 유통체계로 인정하여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체 구성원 전체를 가입 대상 자격을 줄 수 있는 사업체인가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개별 사업체별로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매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당 사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예술 산업 사업체가 리스트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예술인 복지모델에 사업체 단위의 단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형식은 철저하게 개인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표준직업분류상 예술인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 사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록 예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 접근을 통해 예술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직무 형태와 직능 수준을 가지고 참여하는 예술분야 종사 인력 모두가 예술인 복지모델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에 의한 예술 산업의 종류

코드 번호	종목		적용 범위 및 기준
	세분류	세세분류	
921100	영화 배급업	영화 배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영 또는 방송용 영화필름 및 테이프를 다른 사 업자 에게 공급, 판매, 임대해주는 영화배급사업체 의 활동 (필름 교환 및 영화필름의 배달 및 보관, 예약 서비스 와 영화필름 및 비디오테이프의 공급, 임대 및 구매에 관련되는 서비스 포함)</li> </ul>
921200	영화 상영업	영화 상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관, 노천 또는 개인 영사실 및 기타 상영시설 에서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는 업</li> <li>○ 비디오상영소극장, 영화상영극장</li> </ul>
921401	연극, 음악 및 기타	기타 예술관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li> </ul>
921402	예술 관련 산업	악극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동 포함)</li> </ul>
921403		극단	
921502	영화제작 관련업	일반영화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영화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홍 행, 교육, 훈련,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 적 으 로 상영 또는 방영할 일반영화(광고용 제외)의 제작(만화영화의 제작도 포함)</li> <li>• 극영화, 문화영화, 영화관상영용의 비디오 필름제작, 복 제</li> </ul> </li> </ul>
921901	공연 관련 산업	공연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운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 하는 업</li> <li>- 서커스 공연장, 인형극 운영, 말타기대회장, 투우장, 투 견장</li> </ul> </li> </ul>

다음 단계에서는 가입 가능 단체로서의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체의 직원 가운데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직원(예술인 및 예술 산업 종사자)은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제공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가입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간단한 서류심사 후 가입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공인된 예술 산업 사업체 근무자의 경우 그 직무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가입 자

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정규직과 임시직(파트타임 제외)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체별 접근이 용이한 점은 개인의 직업(직무)이 무엇이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예를 들면 프랑스 사례와 같이 공연시설에 근무하는 사무원·안내원·운전원·전기기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무원이나 안내원 등은 직업 분류에 근거하지 않고 산업 분류에 의해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 대상 여부가 판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증을 신청한 단체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 단체로 인정하도록 하면 행정 비용도 줄이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국공립 예술단체 및 예술시설인 경우에는 인증단체로 인정하도록 한다. 공연분야 국공립 예술단체는 191개 단체<sup>1)</sup>, 문예회관은 160여 개, 그 외 국공립 미술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광역시·도에 의해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인정받은 경우모두 인증단체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매년 정확한 단체 리스트가 확정 가능하다.

셋째, 최근 3년간 1회 이상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을 보조 받은 실적이 있는 단체인 경우에도 보조금 액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증단체로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는 단체 인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소속 직원 및 단원에게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자격 부여를 위한 것이므로, 보조금 수혜 실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가 직원 및 단원과의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술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라야 한다. 그 경우 단순히 동호회나 동인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예술 단체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인증 절차는 해당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열거식으로 공지한 후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인증 신청시 관련 프로그램명, 보조금 수령 액수, 결과 보고서 및 평가 결과 등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는 보조금 관련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크로스 체크하도록 한다.

1) 문화관광부(2008), 『2007 공연예술 실태조사』, 185쪽

사업체별 접근 방식의 운영에서는 소속원의 개별 가입 절차는 간편하게 하는 대신 사업체 인증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 개별 신청에 의한 자격 부여 방식

다음으로 개인별 접근 방식에서는 ①예술소득 ②관련 자격증 및 수상 실적, ③예술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자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다만 예술 관련 협회의 멤버십이나 예술계열 교육기관 수료를 나타내는 학력 등은 자격 요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첫째, 예술소득의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 확인만으로 가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국세청에 자영예술가로서 소득신고를 한 예술인 및 스태프로서 예술소득이 연평균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소득’과 ‘예술관련 소득’의 구분 : 작가를 예로 들면 작품 원고료나 작품집 인세는 ‘예술소득’에 해당하고 강연료나 강의료는 ‘예술관련 소득’에 해당하며, 연주자의 경우 출연료나 오케스트라에서 받는 임금은 ‘예술소득’에 해당하고 강연료나 예술교육 사례비는 모두 ‘예술관련 소득’에 해당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6』에 의하면 예술인 가운데 예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27.2%, 월 10만원 이라는 응답이 5.8%로 연간 예술 소득 120만원 이하가 전체의 33%에 해당하므로 연간 수입 100만원 이상이면 전문 예술인으로서 직업적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또한 소득 기준을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예술인 가운데 소득기준 가입 대상자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 한편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2004)」의 ‘농업인 및 어업인’ 정의에서 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한 사례가 있음

- 국세청 신고액 기준이므로 실제 해당자가 많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나 지방비 및 문예진흥기금 수혜 실적이 있는 경우

-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문예진흥기금의 보조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하는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 제출

둘째,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상실적이 있는 예술인의 경우 가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경연대회, 예술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열거식으로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경연대회나 예술상의 경우 대회 자체의 신뢰도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대회 선정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 건축분야의 건축사, 무대예술인 전문인과 같이 예술계 내부의 자격제도가 있는 경우 자격증 보유자는 모두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자격을 인정

- 관련 자격증 사본을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 제출
- 건축사의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부여되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모두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7말 현재 16,210명에 이룸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자는 2006년말 현재 1,764명임

○ 권위 있는 경연대회나 신춘문예 등을 통해 입문한 경우

- 권위 있는 경연대회나 신춘문예 등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선정하여 리스트를 작성 공지하도록 하고, 리스트에 없는 대회의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리도록 함
- 해당 수상 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을 예술인복지모델 사무국에 제출

○ 권위 있는 주요 예술상에서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 권위 있는 주요 예술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선정하여 리스트를 작성 공지하도록 하고, 리스트에 없는 대회의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리도록 함
- 해당 수상 실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을 예술인 복지모델 사무국에 제출

셋째, 다음으로 예술 활동 실적에 의한 가입 자격 부여는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해 가입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 심의에서는 자격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실적물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비 출판이 가능한 단행본 출판이나 자비 전시가 가능한 대관전시 실적의 경우,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개인별 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에서 분야별로 몇몇 예시 기준을 제시해 본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예술인이나 지원 인력은 이에 준하여 기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학분야: 최근 3년 동안 권위 있는 문예지 발표 건수나 단행본 출판실적으로 근거로 가입 자격 부여

- 소설가는 최근 3년 동안 문예지나 단행본 소설선집에 신작 단편소설 3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창작집을 1권 이상 출간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인은 최근 3년 동안 문예지 또는 단행본 시선집에 신작 시 9편 이상을 발표했거나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시집 1권 이상을 출간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극작가는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연극잡지에 3편의 이상의 신작 희곡을 발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나리오작가는 최근 3년간 문예지 및 영화잡지에 3편의 이상의 신작 시나리오를 발표했거나 1편 이상의 신작 영화가 제작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시각예술분야: 최근 3년 동안 개인전 또는 그룹전, 기획전, 초대전 등의 전시 실적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 부여
  - 화가는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갤러리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조각가는 최근 3년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나 조각 공원 등에 설치한 신작 작품이 3편 이상이거나 갤러리의 기획에 의한 개인전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공연예술분야: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공연 실적을 기준으로 참여 정도에 관계없이 가입 자격 인정
  - 연극배우는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연극 공연 작품을 기준으로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연극연출가는 최근 3년 동안 10회 이상의 연극 공연 작품을 기준으로 1편 이상 연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무용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안무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작품에서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연주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케스트라 연주회나 공동 출연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성악가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오페라나 공동 출연 연주회에 출연한 실적이 있거나 1회 이상의 독주회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작곡가는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신작 악곡을 선집 음반이나 연주회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이나 개인 작곡발표회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대중예술분야: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공개 상영된 필름, 방송의 경우 방영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건수를 기준으로 가입 자격 부여

- 영화배우는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영화감독은 최근 3년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 1편 이상을 연출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텔런트는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에 방영된 드라마에 3편 이상 출연한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가수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동 출연 연주회나 방송음악회에 출연했거나 1회 이상의 단독 콘서트 실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집 앨범에 3편 이상의 신곡을 발표했거나 1건 이상의 독집 앨범을 출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을 인정

### 3.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원칙적인 방향과 현실적 방안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시안’으로 마련해 본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설정이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예술계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복지모델 가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장에서의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우선 합의가 가능한 대상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격 기준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초기에는 보다 촘촘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적인 규모나 추진 속도보다 예술계 내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성이 먼저 요구되기 때문이다.



Session2

##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는 문화예술인들은 화려하고 우아하며, 소득도 높은 계층으로 보는 경우가 매우 많음
  - 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화려함, 우아함, 동경 등의 수사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이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삶의 질이 겉모습만큼 화려하거나 우아한 문화예술인은 아마도 손에 꼽히는 소수의 소위 스타급 인사들에 국한될 것임
- 일반인들이 소수의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예술인들 생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예술인들의 경제적 상황, 얻을 수 있는 복지혜택의 정도, 정신적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심은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사실임
  - 문화예술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건조하게 표현하자면 예술인들의 노동시장에서 지위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이거나 영세자영업자로서, 고용 및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문화예술인이라 불리는 창작예술가와 실연예술가 외의 관련 종사자, 즉 통상적으로 불리는 스태프들의 삶의 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목조차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예술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1,504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개인기준으로 볼 때,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58.4%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연평균소득이 낮으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정규직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상태의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 위와 같이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강화가 요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음
  -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인수위 백서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회설립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시 “예술인 복지지원제도(보험과 공제제도 결합)” 도입을 보고한 바가 있음
  -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예술인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며, 연구방향은 크게 ①예술인 공제사업 가입기준 설정, ②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상품, ③예술인 공제사업 관리운영체계, ④예술인 공제사업 자산운용 및 재정확보, ⑤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법 및 규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 공제상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2. 예술인 생활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sup>1)</sup>

-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예술인들에 대한 경제 및 복지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화예술 10개<sup>2)</sup> 장르 600명을 대상으로 2008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동 조사결과를 통해 예술인들의 실태와 공제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 2007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1,5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구간별로 월 평균 예술관련 소득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가 39.9%, 21~50만원이

1) 본 부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박영정)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 있는 장르중 어문 및 출판을 제외한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및 연예(대중예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8%, 101~200만원이 10.5%, 201만원 이상이 22.8%로 나타났으며, 예술소득에 있어 예술가들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볼 수 있음

〈표1〉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

구분		2003년	2006년	2008년
100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44.6	33.0	39.9
	11~20만원	4.1	3.7	3.8
	21~50만원	8.5	9.5	10.8
	51~100만원	11.7	9.9	12.2
	소계	68.9	56.1	66.7
101~200만원		14.3	20.0	10.5
201만원 이상		16.9	23.9	22.8

자료: 박영정 외(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중복응답) 국민연금 가입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 40.5%, 민간 연금보험 가입 19.5%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음
  - 반면에 노후대비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경우는 11.7%,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5.7%로 조사되었음
-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직업이나 예술활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음
  - 이와 같이 예술활동을 은퇴하거나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0.8%의 예술인들이 낮은 소득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한 창작환경(13.4%), 직업적 불안정성(12.7%)을 들고 있음
- 예술인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건강보험은 98.2%로 거의 모든 예술인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국민연금 52.0%, 고용 및 산재보험은 33.3%, 33.8%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위와 같이 건강보험에 비해 다른 보험에의 가입이 낮은 사유는 첫째 건강보험의 경우 바로 질병 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보험의 경우 노령, 실업, 산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야 받을 수 있기에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둘째는 4대 사회보험이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보장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노후(은퇴 후) 연금제도,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순서로 나타났음
- 현재 추진중인 예술인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공제회가 성립된 이후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응답이 나왔음
- 즉 공제회가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경우는 48.5%로 한 절반수준인 반면에 공제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가입하겠다는 경우가 40.5%로 나타났음
  - 예술인들이 공제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예술인 공제회 역시 한 번 지켜보자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볼 수 있음
- 공제회에서 운영했다면 하는 상품으로는 노후연금 상품운영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지원이 12.7%, 주거안정지원이 11.0%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자녀교육비 지원(9.3%), 업무상 상해지원(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공제회 가입자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술분야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2.5%로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예술분야 종사기간 고려가 30.3%, 예술관련 협회 가입 여부가 23.0%로 나타남

### 3.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예정 공제상품(안)

#### 가. 재원조달

- 예술인 공제사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공제사업 자금의 조성은 네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①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②정부출연금, ③정부·지자체,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적보조금 정률공제, ④기타 민간에서의 지원금, ⑤공제기금의 수익으로 구성됨
-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재원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되는 공제회원들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하게 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구좌를 결정하고 이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됨
  - 적립성 공제상품은 공제회원이 장기적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금과 같이 특정연령에 도달시 공제급여를 받게 되는 상품임
  - 따라서 공제급여는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초로 하여 연금이 지급되게 됨
  - 공제사업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수가 함께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할수록 공제부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도 높아지게 됨
    - 공제부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입은 다시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된다는 점에서 공제부금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음
- 두 번째,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초반에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재원이 없을 경우 가입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고,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예술인 공제회 설립 검토’가 국정과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임을 인식하여 공제사업에 정부예산 지원 필요
  - 예술인 공제사업 초년도에 200억원, 두 번째 연도에 추가적으로 200억원, 총 400억 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의 공제상품은 적립성과 보장성 상품으로 구성되며, 정부예산은 이 중 보장성 상품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보장성 상품이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험상품을 지원하는 상품임
    - 보장성 상품의 경우 상품의 성격상 전문성(손해사정인 등)과 많은 인력들이 소요됨으로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장성 상품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지원할 수 있음
    -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사업 가입자들 대상으로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보다는 외부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
  - 보장성 공제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증가하거나 공제상품의 내용을 확장할 경우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함
    - 보장성 보험은 공제회원 약 2만명이 400억원의 이식이자를 활용할 경우 상품 구성이 가능할 것임
- 세 번째,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체에 대한 공적보조금의 정률 공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률공제를 통한 마련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여기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률공제란 매년 지원되는 예산에 일정비율(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율)을 각출하여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각출된 재원을 다시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임
  - 첫 번째는 재원을 각출한 본인의 공제사업 계좌로 각출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각출된 재원 전부를 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동일하게 나누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각출된 재원에 대한 배분문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될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제사업의 네 번째 주요재원은 민간예술단체 혹은 민간 기업들로부터의 후원금이라 할 수 있음
  - 민간기업들의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예술작품 등을 기업이미지, 광고 등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제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즉 민간기업들에서 주체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에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부담금의 일부를 예술인 공제사업에 기부할 수 있을 것임
  - 단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외에도 공제사업 가입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작품들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무형의 이득에 대한 기부행위를 통해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기업 혹은 전문업체들이 문화예술인 보험료의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등을 사용하여 기업 혹은 단체의 홍보, 이미지제고 등에 활용시 강제는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제사업의 마지막 주요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수익이라 할 수 있음
  - 이자수익의 경우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보장성 상품에 대한 예술인 공제사업가입자들의 지원과 적립성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향후 개발될 공제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나. 공제상품(안)

- 예술인공제사업에서 운영할 공제상품은 기본적으로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08)”에서 제안된 유니버설 공제모델(Universal Mutual Model)에 기초하고 있음
  - 문화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같이 특정형태 혹은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직업군이며, 수입구조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태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니버설공제의 경우 공제사업에 가입이후, 가입자의 편의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문화예술인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모델로 선정하고자 함
- 공제상품은 크게 보장성 상품과 적립성 상품으로 구성됨
  - 보장성 상품을 통해 사망,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실비 등을 지원하고, 공제사업 가입과 동시에 제공되는 공제사업의 보편적 공제상품임
    - 즉 보장성 상품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상품임
  - 적립성 상품은 노후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본인이 납입한 공제부금과 이자를 통해 향후 60세 이후에 일시금·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상품임
    - 적립성 상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문예진흥기금의 각출금으로 공제부금이 구성됨
    - 적립성 상품의 특징은 기금의 각출금을 배분시 예술인 공제사업의 목적인 예술 활동에 종사하지만 저소득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함
    - 즉 문예진흥기금의 각출금의 일부는 기금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나머지 재원은 전문 혹은 직업예술가이면서 국민연금이 납부예외, 체납 상태인 가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문화예술계 공동(혹은 연대)보조금)

- 향후 문예진흥기금으로 부터의 지원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확대될 수 있음

### 1) 보장성 상품

- 보장성 상품은 “예술인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2008)”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는 공제상품임
  -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재원은 정부에서 출연한다는 가정하에(2년간 약 400억원) 매년 발생하는 이자(매년 4%이자, 금액 16억원(초년도 8억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보장성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 가입자는 2012년까지 공제사업에의 가입자가 2만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상품을 구성함
  -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여기서는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해약률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
- 보장성 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 활동 지원비의 네가지 임
  - 질병사망은 40세 남성 기준 위험률(0.00068)을 기준으로 함
  - 상해사망의 경우 연령, 직업 혹은 직종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은 1급(예술가기준: 미술가, 사진작가, 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무용가 등)<sup>3)</sup>, 가장 높은 것은 4급(곡예사, 스텐트맨 등)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으로 1급과 2급의 중간인 1.5급을 기준으로 함
    - 이 경우 적용 위험률은 1급(0.0004)과 2급(0.00073)의 산술평균을 적용
  -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사망과 같이 1~3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1급과 2급의 산술평균을 적용(0.00019)
    - 상해등급에 따라 보장금액의 3%에서 100%까지 지급하며, 사고발생 건별로 산정됨

3) 2급의 경우 1급에 비해 위험율이 다소 낮은 조각가, 연기자, 대중가수 등이 대상이 됨

- 상해활동 지원비는 자문단의 도움을 통해 역시 1.5등급에 해당되는 위험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
    -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해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상해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건별로 산정됨
  - 전체적으로 각 보장성 상품에 대한 기준등급은 중립적 가정이라 할 수 있는 1.5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술인들의 종사 분야에 따라 등급은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이 증가시 위험률도 역시 높아져 가정된 보험료 수준을 초과할 수 있음
- 플랜 1: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25만원×2개월분=5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첫 번째 플랜은 상해보험금 2,000만원과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활동지원비 50만원을 보장하는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33천원(연간)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6억 61백만원이 소요됨
    - 2012년까지 가입자가 2만명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총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이자수익이 16억원이 됨에 따라 잉여금은 9억 38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고려시 2011년 누적재원은 10억 76백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 보장성 상품 플랜 1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예산(A)	총보험료(B)	잉여금 (C=A-B)	누적재원 (D=C+Dt-1)
2010	20,000	33,091	8,000	6,618	1,382	1,382
2011	20,000	33,091	16,000	6,618	9,382	10,764
2012	20,000	33,091	16,000	6,618	9,382	20,145

- 이자수익과 가입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시 플랜 1의 보장수준에서 보장성 상품에 대한 누적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 장기적인 보험료 추계가 필요할 것임
- 여기서의 추계는 앞에서 전제한 것과 같이 해약률이 “0”이며, 40세 남자를 가정 한 것으로 연령과 성별이 변경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와 수지는 변할 수 있음
- 또한 보장성 보험상품을 공제사업본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시 운영비용이 추가 될 경우 적자시점은 앞당겨지거나 공제상품의 보장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 공제상품 보장수준 변경에 따른 수지변화는 아래의 플랜 2와 플랜 3에서 살펴 봄

□ 플랜 2: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50만원×2개 월분=10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두 번째 플랜은 첫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상해 정도에 따라 상해활동 지원비 수령액은 변할 수 있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시 개인에 따라 상병수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3천원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8억 57백만원이 소요됨
  - 플랜 2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년도에 △57백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차년도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을 고려시 2차년도부터는 수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가입자가 2만명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이 됨에 따라 2011년 잉여금은 7억 42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고려시 2011년 누적재원은 6억 85백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 플랜 2의 경우 가입자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플랜 1에 비해 더 빠르게 누적적자가 발생할 수 있음

〈표 3〉 보장성 상품 플랜 2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예산(A)	총보험료(B)	잉여금 (C=A-B)	누적재원 (D=C+Dt-1)
2010	20,000	42,862	8,000	8,572	△572	△572
2011	20,000	42,862	16,000	8,572	7,428	6,855
2012	20,000	42,862	16,000	8,572	7,428	14,283

□ 플랜 3: 상해사망금(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상해활동 지원비(50만원×3개월분= 150만원)를 보장시

- 보장성 공제상품의 세 번째 플랜은 첫 번째, 두 번째 플랜과 동일하지만 상해활동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 위험률을 기준으로 1인당 보험료는 약 49천원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초년도 총보험료는 약 9억 81백만원이 소요됨
  - 플랜 3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년도에 △1억 80백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차년도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을 고려시 2차년도부터는 수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가입자가 2만명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자수익이 16억원이 됨에 따라 2011년 잉여금은 6억 19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전년도 잉여금을 고려시 2011년 누적재원은 4억 38백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4〉 보장성 상품 플랜 3

(단위: 명, 원, 십만원)

연도	인원수 가정	인당보험료 수준	예산(A)	총보험료(B)	잉여금 (C=A-B)	누적재원 (D=C+Dt-1)
2010	20,000	49,044	8,000	9,809	△1,809	△1,809
2011	20,000	49,044	16,000	9,809	6,191	4,382
2012	20,000	49,044	16,000	9,809	6,191	10,574

## 2) 적립성 상품

### □ 개요

-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인(무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 수급권 확보가 쉽지 않은 예술인(무연금), 가입기간을 채워 수급권 확보가 가능 하더라도 낮은 신고소득으로 인한 적정한 연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예술인(저연금) 들에게 국민연금의 보장범위를 일정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은퇴 이후 소비를 유지 (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도록 공제사업에서 지원
-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시장(민간 금융사) 에서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즉, 보험료 지원방식을 채택함)
- 예술인 공제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 전부가 아니라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중 소득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국민 연금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를 대상으로 함
  - 소득수준은 국민연금 중위등급 미만(등급기준 20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체납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가입자임

### □ 기본가정 및 설계상 고려사항

- 회원 수 가정
  - 첫 해 2만명이 가입하고, 동 인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분석
  - 사망이나 해약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험률을 회원 수 추계에 반영하되 본 자료에서는 해약률은 고려하지 않음(사망률 0.001619643 가정)
- 수익률은 4%, 관리운영 수수료는 0.2%(본인부담금 대비)를 가정
  - 적립성 상품에 대한 관리운영을 외부에 위탁시 수수료로 가정한 0.2%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설계상 고려사항

- ① 저소득층일수록 보조율은 높이고, 고소득일수록 보조율을 낮추는 하후상박식의 보조방식 채택으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제 첨가
- ②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납입기간 설정: 10년
- ③ 수급개시연령은 60세를 기본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개시연령 연장 가능하도록
- ④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어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50세 이상의 예술인에게 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고려
- ⑤ 공제보조금의 정률공제액 50억 가정시, 30억과 20억으로 나누어 보조금 수혜자 개인구좌 적립과 연금납부 예외자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배분

□ 첫 번째 시뮬레이션<sup>4)</sup>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등급(25~45등급)별로 소득의 10% 정도를 공제부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예상 수급월액 산출

- 30세에 가입 후 30년 납입,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수급할 경우 시뮬레이션 예시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등급(25~45등급)별로 소득의 10% 정도를 공제부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예상 수급월액 산출
- 예상수급월액을 살펴볼 경우, 중위등급인 25등급의 가입자는 약 월 457천원을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적립성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비(납입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수령예정 수급액 현재가치의 비율)는 1.39로 예상됨
  - 여기서 추정된 수익비는 향후 이자율과 관리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공제사업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적립성 상품에 가입후 본인의 공제부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가입자들임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시 유리한 점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지원과 일반 개인연금에 가입시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수수료 및

4) 대략적인 추산이므로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음.

관리운영비를 공제사업에서 부담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임

〈표 5〉 적립성 상품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연소득	연보험료	소계1	예상수급월액2
25등급	14,520,000	1,452,000	1,449,096	457,283
30등급	19,920,000	1,992,000	1,988,016	627,348
35등급	26,280,000	2,628,000	2,622,744	827,645
40등급	33,600,000	3,360,000	3,353,280	1,058,177
45등급	43,200,000	4,320,000	4,311,360	1,360,513

주: 1)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0.02%)를 포함한 금액임  
 2) 향후 공제사업에서 제시하는 이자율 및 관리운영 비용의 변화에 따라 예상수급월액은 변동할 수 있음

□ 공제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입자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전문적 예술활동에 참여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아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은 예술인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중 소득이 국민연금의 중위등급<sup>5)</sup> 미만인 자중 20등급(중위소득 미만의 계층에게 지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혹은 체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자임
- 초년도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자의 규모를 2만명으로 할 경우 공제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천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4천명에 대한 추정근거는 2008년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의 조사결과 예술인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예술인의 50%정도이며 이중 약 40%<sup>6)</sup>가 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

5)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법개정을 통해 소득의 상한(월기준 4,320천원)과 하한(312천원)을 두고 상한과 하한사이에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9%)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는 예술인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법개정 이전 등급을 기준으로 분석

6) 이용하(2009)의 연구참조

- 따라서 이를 기준을 할 경우 약 2만명중 4천명에게만 우선 지원금을 배분하게 되며, 지원등급은 국민연금 등급 20등급 이하에게 주는 걸로 함
-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규모는 가입자중 연금소득 20등급 이하이면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원 받는 사람중 소득이 높아져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경우 지원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결과

- 30세에 가입 후 30년 납입,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수급할 경우 시뮬레이션 예시
- 적립성 상품중 저소득 예술가들에게 매년 50억(소요예산은 20억 예상)이 보조금으로 투입될 경우 국민연금 소득등급 5등급은 보조율이 45%(본인 납부 연보험료 대비)에 서 20등급은 보조율이 40.2%까지 변동함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소득등급 5등급의 경우, 본인이 연간 312,000 원을 납부하면 예술인 공제사업에서 연간 140천원(월 11.7천원)을 보조하게 됨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제사업 가입자들의 예상수급월액은 60세이후 5등급은 약 월 142천원, 20등급은 월 450천원으로 추정됨
  - 각 등급별 수익비는 5등급이 2.02배, 20등급은 1.95배로 예상되며, 여기서의 수익비는 개인납부(가입기간, 납부금액 등), 정부보조금 등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표 6〉 적립상품 시뮬레이션 결과

구분	연소득	연보험료	보조율	보조금	소계1	예상수급월액2	예상수익비3
5등급	3,120,000	312,000	45.0%	140,431	451,526	142,486	2.02
10등급	4,440,000	444,000	43.4%	192,707	635,434	200,520	1.99
15등급	6,840,000	684,000	41.8%	285,878	967,938	305,447	1.97
20등급	10,200,000	1,020,000	40.2%	409,913	1,427,053	450,327	1.95

- 주: 1)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0.02%)를 포함한 금액임  
 2) 향후 공제사업에서 제시하는 이자율 및 관리운영 비용의 변화에 따라 예상수급월액은 변동할 수 있음  
 3) 예상 수익비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의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여기서는 예술인 공제사업에 적용될 보장성 상품(안)과 적립성 상품(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함
- 첫째, 본 논문에서 추정된 적립성 상품의 경우 가정으로 삼은 소득등급이 동일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예상수급월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시 기준으로 삼은 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예술인들의 소득은 추정에 사용된 국민연금 등급의 하위 등급에 주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상위등급에 분포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또한 여기서의 추정은 적립성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의 저소득예술인에 대한 보조금과 보조비율, 지원대상자의 규모, 장기적인 이자율 및 관리운영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둘째, 공제사업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라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참여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 등에서 각출된 재원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음
  - 셋째, 소득이 낮지만 낮은 등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장기적으로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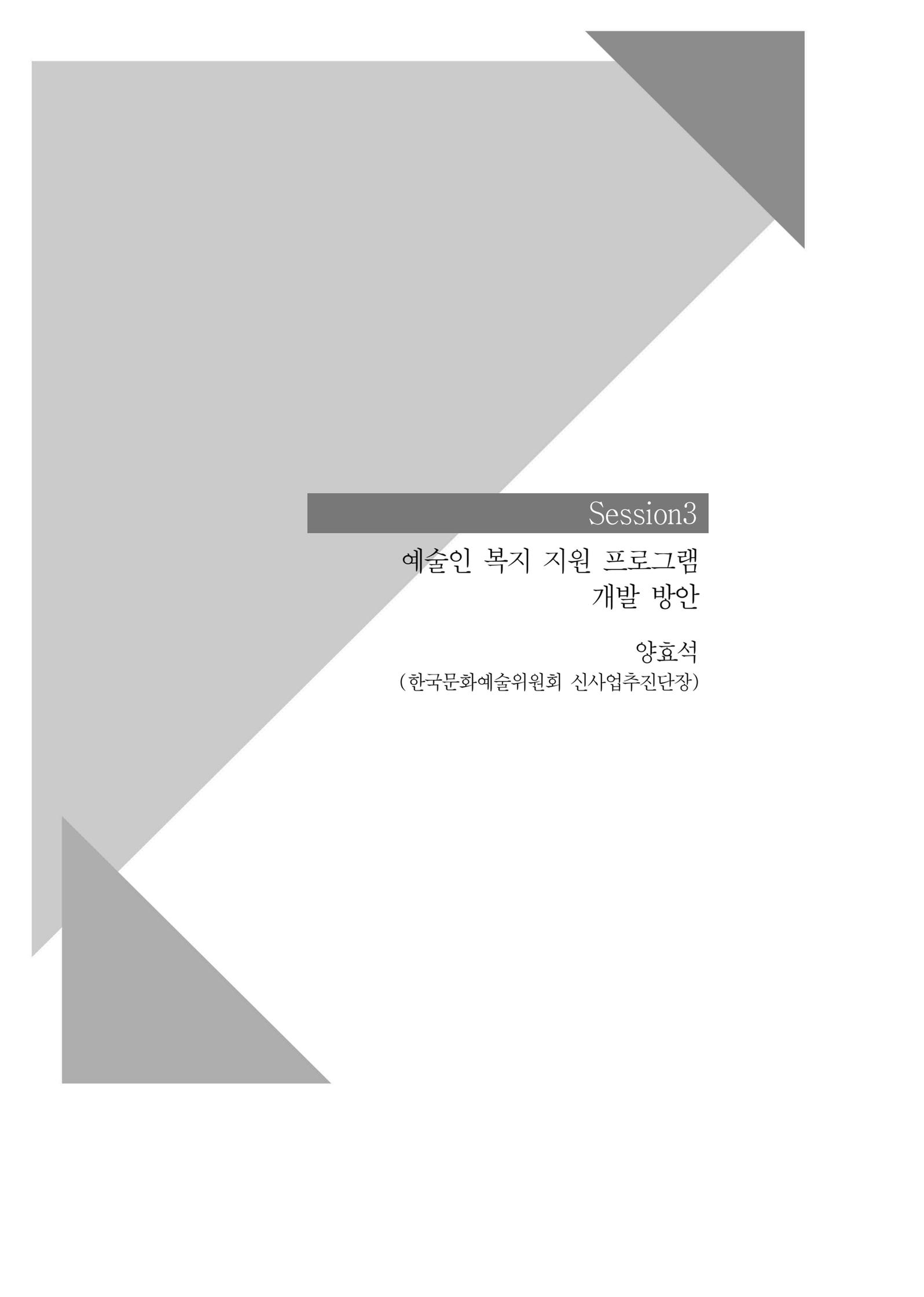
## 4. 결론

- 한국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처음으로 예술인공제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이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희망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은 예술인공제사업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및 서비스제도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정부 지원방안이 어려움에 따라 간접적으로 정부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예술인 공제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즉, 현재 진행중인 예술인 공제사업은 정부와 개인이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기존 사회보험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음
- 예술인 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많은 예술인들이 공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술인들이 직업, 소득의 차이로 인해 공제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부도 단순히 예산지원만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기 보다는 공제사업이 시행된 후 적극적인 재정적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이 새로운 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연대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김수환·강길환 외(2002),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김태완(2009), 『문화예술인 복지모델 도입방안』,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이태진 외(2008), 『영화인 복지정책 효율화 방안』, 한국영화인복지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08-27
- 박영정·공혜영(2008),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영정·공혜영(2008),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2008-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정책포럼(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12월
- 이규석(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2007예술정책연구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 이용하(2009), 『한국의 국민연금과 예술인 가입현황』,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갑영·조현성·김영범·신효진(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조성한·김용하·석재은·류건식·박영정 외(2008),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
- 최진욱(2007),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예술정책포럼
- 황준욱·안주엽·이상민·김도화·김은경(2006),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구조와 정책 지원』, 한국노동연구원
- 허은영(2006),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EU(2006), The Status of Artists in Europe
- Eurostat(2007), Eurostat Labour Force Survey





Session3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



## 1.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 배경

- 문화예술인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취약한 보장상태로 연결되는 등 특단의 복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보장률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취약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들 제도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 및 취업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인구 고령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 개선 없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도 어려움
  - 그동안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는 있어 왔지만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예술인복지 증진’은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현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어 다양한 추진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새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 중 ‘예술인공제회 설립 검토’가 세부 실행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업무영역이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식임을 감안, 예술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예술인들이 해당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운영 조직 및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향

## 2. 예술인 복지제도 추진경과

-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에 “문화예술인 공제회 설립을 통한 창작기반 조성” 포함 ('07년)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과제내용으로 “예술인 공제회 설립 검토” 포함 ('08.10월)
-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08.3월~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인 공제회 설립에 대한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 조사 실시 ('08.5월~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실시 ('08.6월~12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08.11.26, 한국연극인복지재단)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정책심포지엄 개최 ('08.12.17,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향 및 구체적 방법 연구 실시 ('08.12월~'09.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실시 ('09.4월~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예술인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현황

### 1) 예술인 생활실태

#### ○ 취업형태(\*불안정성)

- 비정규직 : 자유전문직(42.7%) 및 임시고용직(9.8%) ⇒ 총 52.5%
- 정규직 : 정규고용직(30.5%) 및 고용주(17.0%) ⇒ 총 47.5%

#### ○ 저소득 및 소득의 단속성 상태 심각

- 개인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8.7%
- 12개월 지속 근무자 41.8% 불과(58.2% 소득의 단속 존재)

#### ○ 사회보장제도 가입·수급 실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66.7% 미가입
- 건강보험 98.2% 가입, 저소득 문제 감안할 때 진료시 본인부담분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능력 문제 발생
- 국민연금 53.0% 가입,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18.1% 가입, 29.8% 미가입

\* 실연예술가, 1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임시고용직 및 자유전문직 미가입률 고조

### 2) 예술인 복지제도 수요 조사

#### ○ 예술인의 최우선 경제적 현안 : 노후대비(43.2%)

#### ○ 질병상해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각각 90.8%, 86.2%의 필요성 인식

#### ○ 예술인공제회 설립 관련 인식

- 공제회 제도 필요성 인식(91.0%), 가입의사 여부(48.5% 긍정, 40.5% 유보적 입장)
- 사업 우선순위 : 노후연금상품(51.2%), 생활비지원(12.7%), 주거안정지원(11.0%)
- 공제회비 부담 가능액 월 1만원(30.7%), 3만원까지(26.8%), 5만원까지(13.2%), 부담여력 없음(17.8%)

### 3. 예술인복지 관련 지원현황

#### 가. 국고 사업

##### 1) 전문무용수복지 지원

- 사업주관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윤성주)
- 소요예산 : 500백만원 ('09년)
- 사업내역
  - 무용수 컨설팅 지원
    - 상담센터 운영 : 상해, 재활, 복지, 직업전환, 오디션, 해외진출, 병역 등 상담
    - 상해진료 지원 : 상해진료비 할인(지정병원) 및 일부 보조, 상해예방 컨설팅
    - 찾아가는 컨설팅 : 지역 무용단체 애로사항 상담 및 센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문무용수 지역활동 활성화와 지역무용 발전을 위한 토론
  - 무용수 취업 지원
    - 댄스즈 잡마켓 운영 : 국내 및 세계 유명무용단 소속 안무가 초청, 오디션 기회 제공 및 2차 취업 유도
    - 해외무용단 실태조사연구 : 선진국 무용단의 운영기법, 활동실태, 해외진출 등 실태조사
    - 해외무용가 초청 세미나 : 해외 선진무용단의 지도위원을 초청하여 무용단 운영기법 소개 및 국내무용수의 해외진출 정보 획득
  - 무용수 직업전환 지원
    - ABC<sup>1)</sup> 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취업 지원 : 연기인 대상 무용강사 양성을 위한 ABC 프로그램 과정 운영(문화센터, 방송사 아카데미 등을 대상으로 강사 취업 추진)
    - 무용수 직업전환 심포지엄 개최 : 무용수 직업전환을 포함한 무용인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1) ABC(Actor's Body Conditioning) 프로그램 : 신체의 각 부분 에너지의 연결, 순환 등을 체험하는 코스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작의 시간적·공간적 비례, 내적 표현의지, 시선의 일치 등을 포함함.

## 2) 연극인 치료사 양성 및 취업 지원

- 사업주관 : (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 박정자)
- 소요예산 : 100백만원 ('08년~)
- 사업내역
  - 연극인 대상 연극치료사 양성과정(위탁교육) 이수 후 취업 지원
  - 커리큘럼 : 드라마테라피, 심리치료, 응용연극, 임상연구 및 실습 등
  - 활동영역 : 사회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특수학급, 교정시설 등

## 3) 예술원회원 정액수당 지급

- 법규(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의거, 예술원 회원 우대 및 예우를 목적으로 예술원 회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함.

## 나.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 1) 원로문예인복지 지원

- 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문화예술인 후생복지 차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임.
  - 1인당 매월 60만원씩 생계비 보장 명목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음.
- \* '09년도 예산 : 389백만원 (현재 45명에 대해 지급 중)
- \* '05년도 이후 신규 지원대상자 선정 없이 일몰제 실시 : 수혜자의 연령이 대부분 80대 이상으로 노환 사망으로 인해 매년 지원대상자의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대폭 감소에 따른 사업폐지 수준이 예상됨.
- 광의적 맥락에서 사랑티켓, 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 등 관객개발 공적보조에 의한 수익창출을 통해 예술인복지 증진에 간접 기여하는 일부 사업이 있으나, 예술인 사회보장 측면에서 직접적인 재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제도적 접근 시도는 가시화된 적이 없음.

## 4. 예술인복지 지원프로그램 개발 방안

### 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립형 예술인공제사업 운영)

⇒ 10년도 사업운용 시스템 구축을 거쳐 '1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 예정

#### 1) 예술인공제상품 설계·운용 기본구조

##### ① 적립형 공제급여 예술인 개인부담금+이자수익+장려금(기금사업 보조금각출)

○ 은퇴 후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연금저축 상품

##### ② 보장형 공제급여 정부출자금 운용 이자수익 배당

○ 사망시 일시보상금 지급

○ 근로기간 중 상해/장애 발생시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 구체적인 공제상품 설계 및 운용 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 2) 예술인공제사업 관리운영 체계

⇒ 예술인공제사업의 경우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제사업에 가입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

\* 비슷한 예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세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존 공제회(예,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와 같이 공제회를 운영할 경우 조직관리, 공제사업 인력 구성과 지원을 위해 많은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이를 공제사업 가입자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제사업조직을 신설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크게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공제사업본부의 2개 세부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강구

- \*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주요사안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기존 예술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며,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성격을 지니게 됨
-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을 실제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공제사업의 실무기구라 할 수 있음

#### ①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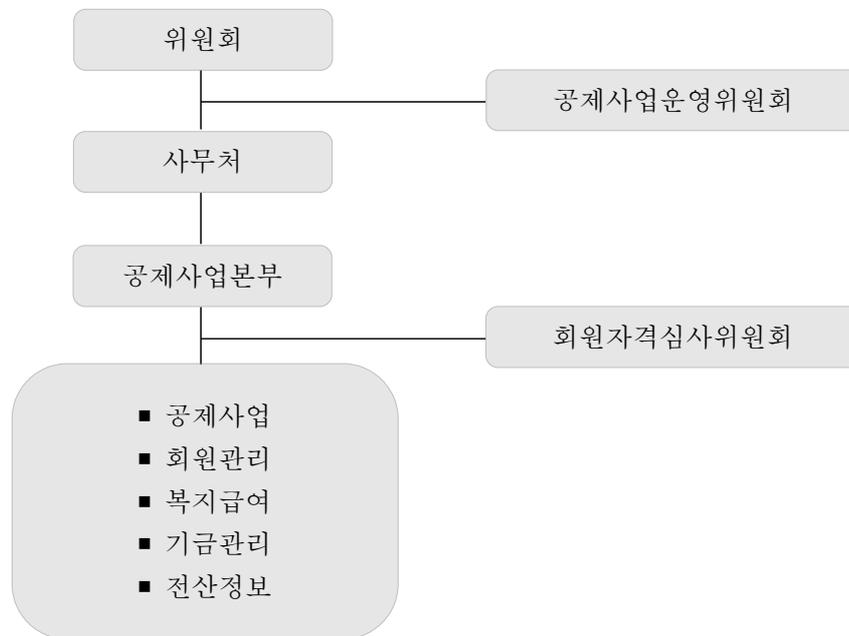
-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성격으로 공제사업 기획, 관리 및 자금관리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 운영위원회에는 가입자들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과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예술인공제사업 운영위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정부관계자, 공제사업 가입자 대표 및 공제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예술인공제기금운용 소위원회를 설치
  - 예술인 공제부금과 정부출연금 책임준비금 운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3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 소위원회에서는 매년 공제기금과 책임준비금의 운용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매 5년에 한 번씩 공제기금의 적립, 투자방법, 기금활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 ② 예술인공제사업본부

-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공제사업에 가입할 문화예술인과 가입자, 공제상품을 관리하게 되며, 이외에도 공제부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을 두게 됨.
-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증명이 모호하여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공제사업본부 내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거나 전문적인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 공제사업본부는 예술인공제사업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크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및 산하에 부문별 실무를 담당하는 체계로 구성함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를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
- 부문별 실무체계는 공제사업, 회원관리, 복지급여, 기금관리, 전산정보 업무 영역으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 공제사업 콜센터 및 상담사를 관리할 콜센터를 두도록 함

<그림 1> 예술인공제사업본부 조직(안)



회원자격심사위원회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 중 기존 예술단체, 예술작품 및 예술소득과 같이 명확히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가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산하위원회로 구성
- 본 위원회는 산하위원회에서 공제사업 가입희망자에 대한 산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산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가입희망자에 대해 추가심사를 하도록 함
- 본 위원회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위원장을 맡고, 공제사업본부장과 예술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
- 의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경우 예술인 공제사업의 가입자로 인정
- 산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가입장르가 10개 분야로 구성됨에 따라 10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소위원회는 장르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함
- 소위원회에서는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지난 3년간의 예술활동 실적, 작품, 추천서 등을 기준으로 예술성에 대한 인정과 이를 통해 공제사업 가입 여부를 판정
-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신청자가 가입판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가입이 보류된 경우 이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본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함
- 판정결과 불복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는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사업 업무

- 공제사업본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예술인공제사업에서 운영 중인 공제상품 총괄, 장단기적 공제사업운영계획 수립
- 공제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사업계획 및 예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지원
- 공제사업 관련 국회 및 정부부처에 대한 사업지원,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모색
- 추가적인 예술인 복지후생 관련 상품 개발, 공제상품 사업홍보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 카드사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방안의 모색
  -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의 욕구가 높은 실업공제상품 개발에 대한 고려

### 회원관리 업무

- 회원자격심사위원회를 지원하며, 예술인공제사업의 회원 가입, 탈퇴 및 가입자 관리, 회원 확충 방안 등을 수립
- 공제상품에 대한 공제금 납부·연체 등 관리
  - 유니버설공제상품의 특성과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공제금 납부 및 회원관리 필요
  -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회원탈퇴를 하지 않도록 함. 또한 일정기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적으로 회원자격 유지
  - 그러나 장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제사업본부와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기회를 부여한 이후 자동탈퇴 유도
- 재무관리사를 두고 예술인 가입자들에 대한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및 상담

### 복지급여 업무

- 예술인공제사업 가입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급여지급 업무 총괄
  - 회원관리팀으로부터 매년 변동되는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
  - 연금상품에 대한 관리 및 급여지급을 담당
- 공제사업 기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회원에 대한 적립 및 보장성 상품 공제금 등 지급과 대출, 회계장부 및 전표관리와 정산, 결산을 맡도록 함
- 복지급여 대출, 다른 공제회와의 연계에 따른 회원복지 및 추가 회원복지사업 시행시 관련 사업 담당

### 기금관리 업무

- 공제사업본부 기금관리·운용지침에 따라 공제부금 및 정부출연금 관리·운용

-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금융 및 재무전문가를 특채로 선발하여 공제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자산운용 총괄, 자산운용전략 기획 및 신규투자처 발굴, 주식운용, 투자기획, 대체투자, 자금 및 실적 관리
- 공제부금 자산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전산정보 업무

- 예술인공제사업 관련 전산 및 정보관리 체계 운영
  - 공제 가입-징수-급여를 담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확충과 정보관리망 확충
  - 유기적인 공제부금 납부로 인해 장기적인 연금급여 지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확충이 필요
- 예술인 공제급여 지급시스템 확충 및 지원

#### (장기적)콜센터 운영 업무

- 예술인공제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1~2만명, 장기적으로 5~7만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회원관리팀을 통해 많은 수의 회원을 관리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있음
  - 공제사업에의 가입, 공제부금 납부, 공제급여 수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회원들의 여러 문제들을 접수하고 이를 관련 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콜센터가 필요함
  - 공제사업이 전국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방에서 공제사업에 가입을 희망하거나 가입 후 공제급여 사유가 발생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콜센터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만약 콜센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현재 예술위원회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어 지방 예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지부를 설치하거나 현 지역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재단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별도의 지부를 두거나 지방위원회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많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따라서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위탁의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및 지방공제사업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콜센터 내에 예술인들의 공제사업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상담사를 두도록 함
  - 공제사업의 경우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기금관리 및 전산정보 업무의 경우 기존 예술위원회 조직 내에 있는 기금관리 및 전산정보와의 업무 연계 혹은 관련 조직의 통합적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나. 복리후생사업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

예술인공제사업의 본격시행 후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사업운영 시스템이 안착될 시점에('13~'14년 예상), 실질적인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함('14년 이후 예정).

※예술인공제사업본부에서 복리후생 관련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전담

### 1)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초기 지원프로그램 개발(안)

#### ① 예술인 전문 치료·재활·요양 의료서비스 지원

- 기존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단, 예술활동 중에 입은 상해·질병에 한해 서비스 제공

- 1차로 치료·재활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상해가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2차로 재활·요양 전문 시설로 제후를 확대하여 노인 질환을 겪는 빈곤층의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까지 넓혀 나가도록 함.
- \*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및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현재 시행중인 의료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분야별로 외부기관에 사업운영을 일부 위탁하는 방안 강구

## ② 예술인 취업교육 및 재교육, 자녀 교육(보육) 지원

### 예술인 본인 교육

- 커리어 향상(재교육) 프로그램 : 자체 개발 또는 아웃소싱
  - 창작, 실연, 스텝 예술가들을 위한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프로그램 매개 지원
  - 이론지식 개발, 학술교류 등 외연 확장을 통해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 보완
  - \* 예술위원회의 무대예술아카데미 등 기존 커리큘럼 연계 운영 모색
- 커리어 전환(취업교육) 프로그램 : 자체 개발 또는 아웃소싱
  - 직업전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무용수 직업전환 재교육 등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이를 전 장르로 확대하여 프로그램 풀(Pool)을 구축 발전시킴

### 자녀 교육(보육) 지원

- 탁아·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예술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커다란 고민사항인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
  - \* 국공립 시설 또는 민간재단의 우수기관(예 ; 삼성어린이집)과의 제후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초창기에는 2~3개 시설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사업효과 검증 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함
-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예술인 자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비용 무료 또는 할인서비스 제공

## 2) 예술인복지제도 도입 후 중장기 지원프로그램 개발(안)

⇒ 타 정부부처(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및 민간기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추가재원 확충, 국고 및 기금의 지원역할 분담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 금융서비스 지원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하여 금융대출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하도록 생활공제사업 개발 → 예술인공제사업 중장기 부가서비스 확산전략의 일환으로서 공제기금 운용 추이에 따라 적정상품 개발 추진

○ 주택구입비, 임차료 대출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상환 보조

\* 지원규모가 크므로 대출금액 상한선 설정 등 리스크 대비책 요망

○ 생활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용자

### ② 여가·문화복지 서비스 사업

일반시민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사회적 기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 당사자들이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적보조를 단계적으로 시행

○ 특정 도서 유형 및 목록 지정범위 내 도서구입비 할인 서비스 제공

- ‘한국출판협동조합’과 제휴를 통해 예술인 대상 도서가격 할인 혜택 부여 모색

○ 공연·전시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할인 서비스 제공

○ 문화상품 구입비, 스포츠 센터 등 신체훈련 시설 이용료 할인 서비스 제공

○ 호텔, 콘도, 펜션 이용시 가격 할인, 철도·항공료 할인 등 휴양 편의 지원

\*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원 복지카드 개념을 준용하여 가칭 ‘문화예술인카드’를 개발 운영하는 방안 강구

\* 이미 오랜기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제회들의 경우 공제회원을 위한 공제상품은 물론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 제도(휴양소 운영, 복지상품 판매 등)를 운영하고 있음.

→ 공제사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제회와의 MOU 체결과 최소한의 비용지원을 통해 예술인공제사업 가입자들이 다양한 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 참고자료 : 예술인복지 관련 국내외 사례 (유형별 사례 및 시사점)

1. 예술인 최저생활 보장제도

프로그램 예술인 계층의 소득이 법정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

해외유사사례 네덜란드 WIK(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sup>2)</sup>

- 네덜란드의 예술인 최저생활 보장 제도인 WIK(Wet Inkomensvoorziening Kunstenaars)는 법정 최저선 이하의 소득을 받는 예술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10년 동안 최대 4년간 보충소득을 지원함
- 수당은 지역별 사회보장금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에 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상환 받는 구조로서 수당금액은 일반복지 지원의 70% 수준임.
- 수당의 수급 여부는 특별예술인기금(special artists' fund)에서 결정하며, 예술인 최저생활수당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당 수급년도를 기준으로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연차별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수당을 받던 예술인이 한 번 법정 최저선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수당지급은 중지됨.

시사점

- 예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김문길, 「예술인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9

## 2. 예술인 재교육 사업

프로그램 예술인 재교육 사업은 현역 예술가들이 예술활동 및 직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커리어 향상과 커리어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음

### 가. 커리어 향상을 위한 교육

- 실연예술가나 기술스태프들을 위한 커리어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
- 창작예술가를 위한 이론수업, 세미나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현직자의 해외연수나 타 기관 교환 근무 형식의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나. 커리어 전환을 위한 교육

-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무대예술아카데미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예술인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비 지원
- 세미나, 교육자료, 네트워킹, 정보 공유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해외유사사례

#### 가. 캐나다 무용수전환센터(Dancer Transition Resource Centre)<sup>3)</sup>

- 무용수 직업 전환 지원을 위해 1985년 설립된 기관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용과 관련된 연간 소득의 1%의 금액을 바탕으로 최소 75 캐나다달러부터 최대 250 캐나다달러 사이에서 책정됨.
- 직업 전환을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교육보조금 지원프로그램 운영

3) Joyce Zemans, IFACCA, D'Art Report, Policies and programs of support for senior artists, December 2007,

**상담프로그램** 학문, 재정, 법률, 재정, 개인경력 상담이 제공되며 회원들은 회원 가입 기간 동안 1,500 캐나다달러 만큼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프로그램**

① 직업 재전환 교육 보조금 지원

회원에게 4,000 캐나다달러까지 직업 전환 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 보조금은 교육비, 책값,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지원 자격

- (1) 28세 이상, 최소 6년 전문무용수 경력자 중 캐나다 활동이 4년인 자, 또는 나이 제한 없이 최소 8년 전문무용수 경력자 중 캐나다 활동이 4년인 자
- (2)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지급한 자
- (3) 6년 경력 기간 동안 최소 36개월(3년)은 무용활동을 한 자

② FTS-I (Full-Time Study Subsistence-I)

은퇴를 앞둔 무용수 중에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서 간헐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용수들에게 최대 36개월까지 보조금 지급. 총 보조금은 18,000 캐나다달러를 넘지 못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무용수는 무용계에서 은퇴를 해야 함.

③ FTS-II (Full-Time Study Subsistence-II) -Continuing a Performance Career

현재 무용계에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직업 교육을 받기 원하는 무용수들에게 7,500 캐나다달러까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 자격

- (1) 최소 30세 이상, 10년 전문 무용 경력자 중 캐나다 활동이 5년인 자
- (2) 지원신청 이전 최소 5년 동안 회비를 납입한 자
- (3) 10년 경력 동안 최소 60개월 동안 무용활동을 펼친 자

나. 네덜란드 무용수 재교육 프로그램 (The Dutch Retraining Program for Professional Dancers, Sticing Omscholingsregeling Dancers(SOD))<sup>4)</sup>

4) Joyce Zemans, IFACCA, D'Art Report December 2007, Policies and programs of support for senior artists

- 무용수와 회사들이 프로그램에 매달 급여의 소액을 기부(무용수 : 1.5%, 무용단체 : 추가 2.5% 기부)하며, 이를 은퇴 후 12개월 이내에 교육기획안을 신청하면 교육비와 교육기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무용수의 활동경력, 마지막 연봉 및 교육기획안을 바탕으로 결정됨
- 1차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무용 경력과 최소한 72회 후원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이며 의학적 이유로 퇴직한 무용수는 8년 이상 무용경력과 최소한 60회 후원펀드에 불입했으면 지원 가능. 이 1차 지원대상들이 받는 전일 재교육을 위한 평균적 지원금액은 약 85,000유로임(약 1억원)
- 2차 지원대상은 5년 이상 경력의 무용수 중 최소한 48회 후원 펀드에 투자한 무용수로서 최대 4년 동안 연간 2,500유로 지원 가능

### 시사점

- 국제무용수직업전환센터(IOTPD)가 설립 운영 중일 정도로 직업 전환 재교육은 조기에 직업 활동이 끝나는 무용계에서 정책적 요구가 강함. 국내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역시 주요사업으로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3. 사회복지 지원사업

### 프로그램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

#### 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임시, 일용직 또는 영세기업이나 영세단체의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소득으로 제한할 수 있음

#### 나. 단체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영세한 문화예술기업 및 단체의 단체부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되어 있는 예술인들의 사회복지를 지원함. 일례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 개인부담금 8.5%, 학교법인 부담금 5.0%, 국가부담금 3.5%로 정부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지원함

해외유사사례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장금고(Künstler Sozialkasse, KSK)<sup>5)</sup>

- 독일 자영예술가 및 언론출판가들을 위한 보험으로, 업무계약 대가로 지급된 모든 보수에 해당보수의 4.4% 수준의 보험료율이 부여됨
- 독일의 예술인사회보험은 예술인들이 50%의 가격으로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사회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함. 즉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며, 사용자(users)가 30%, 중앙정부가 20%로 부담함
- 보험분담금은 안정되고 규칙적인 수입원이 없는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 KSK에 가입한 예술인들 중 직업적 예술활동을 시작한지 5년 미만의 초심자들이 분담금 지불의 최저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 3년간 납부 예외를 인정하여 보호해 주기도 함

### 시사점

- 예술인의 지위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사회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새 제도의 도입은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예술인을 편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임.

## 4. 실업급여 지원사업

프로그램 단속적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예술인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해외유사사례 프랑스 앵페르미땅 제도<sup>6)</sup>

5) 독일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 노동사회부 방한 대표단) 자료집 참조

6) 박영정,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공연/영화/방송 분야에서 일정기간 계약 하에 단속적 기간제로 일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 연중 507시간(8시간 주5일로 근무했을 시 약 3개월) 이상 유급으로 계약에 의거해 일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앵페르미땅 지위를 획득하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분담금은 임금총액의 5.4%를 내야하며, 이 중 3.5%를 고용주가, 1.9%를 근로자가 부담함

### 시사점

-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고 있음
- 단속적이며 프로젝트형의 활동이 많은 예술인들은 대부분 상기 고용기간 요건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특별실업급여 제도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5. 컨설팅 지원사업

프로그램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직업/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의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가. 법률컨설팅 서비스

- 예술인의 법적 권리(예술가 권리, 저작권, 세금, 사회적 권리 등)에 대한 법률 서비스 무료 지원. 프랑스 ‘예술인의 집’의 법률컨설팅, 국내외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법률지원 서비스 등 국내외 기관에서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나. 경영컨설팅 서비스

- 영세한 예술단체 및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지원함

#### 다. 취업컨설팅 서비스

- 취업정보공유시스템 개발,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 신진예술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전반적인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함

#### 국내유사사례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프로그램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정보지원 사업 중 일환으로 전문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선전화를 통한 예술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컨설팅은 단체(법인) 설립 절차, 정관변경에서부터 회계·세무·인사·근로/계약, 저작권 관련 법적문제/공간운영 및 예술교육 등 예술단체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함. 예술경영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7인의 전임 컨설턴트들이 예술단체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운영됨

#### 시사점

- 국내에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 만약 컨설팅 제도 도입시 상담 채널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각화하고, 상주하는 전담 컨설턴트 시스템 구축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 추구 필요



## Session4

### 종합토론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시인)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화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지난해부터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의 폭이 당위성이나 다소 추상적인 원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명확한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고 또 이를 현실 법과 제도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던 과거와 다르게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실천명제가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술인들이 예술이라는 직업을 영위하면서 체감하는 고단함이 이미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효용가치에 기대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는 국가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 중 직업적 다양성에 입각한 다소 세분화된 복지정책에 다름 아니다. 예술인 외의 구성원들의 사회적 효용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술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입증은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본 논리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예술인 역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국가 복지제도 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던 이들에게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들이 다른 국가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차등 없이 편입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술인을 사회복지제도

로부터 배제시켰는지 그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과 노동조건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예술계와 정책 연구자들은 꾸준히 예술인들의 국민4대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대부분 예술인들을 위한 별도의 보험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예술인들이 국민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보다 예술인들에게 보험가입대상자격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다는데 생각이 미칠 수 있다. 결국 예술인들이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되면 복잡한 법 개정이나 별도의 보험제도 신설, 보험비용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의 개념을 끄집어낸 것은 바로 여기에서 부터이다.

예술인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의 사례는 매우 많다. 국민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제외는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의 신용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노동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불임금보호에서의 차별,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근로장려세제 및 보육료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혜택에서의 소외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 지난 2009년 2월 한 달간 직업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응답자 101명 중 64%인 62명이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동일한 설문에서 응답 연극인의 61.39%(62명)는 스스로가 근로자이며 연극인들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예술창작을 노동과 별개로 생각해 온 지금까지 예술계 내에서 지배적이었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서 연극인에게 근로자의 신분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90명)가 동의하였다. 이는 근로자라는 신분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라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정신과 물질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와 혜

택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상이며, 이러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극인들의 목소리이다.

몇 해 동안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의 예술인 복지정책과 사업의 예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예술인을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다른 직종의 구성원들과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직업 예술인이 가진 창작활동의 특수성(불안정한 경제적 수익구조, 활동의 비연속성, 임금근로자와의 차별적 활동 행태 등)을 고려한 예술인 복지제도 운영기관 또는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국가복지정책의 1차 대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인의 직업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세부 복지제도를 마련해 이중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급여제도(앵떼르미땅)>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노동법>에 이미 예술인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예술가사회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연방 노동법>과 <예술가사회보험법>을 통해 예술가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캐나다의 <예술인지위법>, 벨기에의 <국왕칙령>과 <국립예술강령> 역시 예술인에게 근로자의 신분을 부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08년 11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의 예는 주목할 만하다. <예술인복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직업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근로자(또는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창작 활동 간 행정적, 제도적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예술인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독립된 기구로서 예술인들을 위한 공제사업, 의료서비스지원, 직업교육과 고용안정화 사업,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적은 직업 예술인들의 직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담당하고 예술인복지기금의 운영과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예술인복지법>이 그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강력한 모델로 언급되어 왔던 <예술인 공제제도>와 갖는 차이점은 공제제도가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 것에 반해 <예술인복지법>은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예술인이 법적 기본권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한 가지는 공제제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재원 지원의 명분이 약하고 설계비용이 크지만 <예술인복지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예술인의 기본적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공공재원 지원의 명분이 명확하고 설계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근로자 신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비용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에서 집행되므로) 물론 <예술인 공제제도>는 매우 유효한 복지모델이므로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전체 예술인이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후, 장르별로 또는 유사한 창작형태를 가진 예술인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공제회>를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들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창작활동을 했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예술인들이 <복지>의 이름에 기대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사회 경제와 복지시스템의 발전 속에서 계속 소외되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찾고자 함이다. 단지 예술창작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법적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예술인들에게 자신이 평생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가혹한 것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예술인 복지정책의 출발은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예술인들에게 찾아주는 것에 있을 것이다.

윤성주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예술인복지제도 도입과 무용수 지원사례

###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정부의 기본 코드가 문화산업 진흥, 참여정부는 기초예술의 개념이었다면 현 정부는 문화복지가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이미 2007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도출된 문화예술인 복지문제가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척된 것은 고무적임. 최소한의 복지가 최소한의 창작을 보장할 것이라는 개념 또한 문화인이 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이상적 논리(복지)가 현실적 상황(재원)과 맞물려 재원확보 라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여하에 따라 예술인 복지사업의 추진가능성이 보일 것이며 확산 또한 생길 것임
- 예술과 예술인이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는 상당히 미흡함. 현행법상 사회를 위해 생산해 내는 예술 창작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예술인을 법적 무직자로 분류함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시키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수의 예술인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혜택인 국민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며, 국민 4대 보험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 금융기관 이용, 사보험금 지급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현 복지제도의 도입은 최소한의 예술인 신분보장이 선결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2. 무용복지와 운영사례

- 예술인 복지의 기준이 예술의 사회적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면 예술에 대한 복지체계는 시장이 아닌 사회적 복지체계, 즉 기존 시장질서 중심의 보상체계가 아닌 사회적 보상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 따라서 ‘일하며, 가난한 예술인’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화 하는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음. 소득과 신분의 불안정, 직업의 불지속성, 한마디로 미래가 불안한 예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적 접근이 필요. 예술인의 양극화 심화현상을 인지해야 하며,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집중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됨. 또한, 예술인이라는 개념 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전체 예술인 복지를 얘기하자면 예술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이를 계량화하여, 예술인 등록제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수준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 통계로 만들어야 함
- 가난한 예술인은 소득 및 취업, 일반 예술인은 환경조건을 어떻게 개선시키는데에 집중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무용인이 당장의 생계문제와 창작의 열망에만 집중하므로 직업전환 및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현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 가. 전문무용수 실태 (2007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 1) 연간소득

구분	1,000만원 이하	1,000~1,500	1,500~2,000	2,000~2,500	2,500만원 이상
비율(%)	36.7	10.2	10.0	19.2	23.9

- 공연활동을 통한 무용수 개인소득은 연간 2,000만원 미만이 56.9%로 전반적으로 열악한 실정
- 연간 1,000만원 미만이 36.7%인 반면 2,500만 원 이상도 23.9%로 나타나 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공존

## 2) 사회보험 가입실태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91.9	59.2	34.7	29.8

- 건강보험의 경우 국·공립단체는 ‘사업장 가입자’가 80.7%로 가장 많았고, 민간단체 및 독립무용수는 ‘피부양자’(가족의 보험 활용)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소속 유형별로 봤을 때 국·공립단체의 경우 비교적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는 반면 민간단체 및 독립무용수의 경우 ‘가입하고 있지 않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 상해 현황

구분	있다	없다
비율(%)	90.2	9.8

- 공연이나 연습 도중 상해 경험이 90.2%로 압도적으로 많음
- 실연예술인 무용인의 경우 공연활동으로 인한 상해 빈도가 높으며 이는 전문무용수의 조기은퇴로 이어짐
- 저임금 구조 및 불완전 고용 등 기초예술이 당면한 예술인복지의 일반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무용은 실연예술의 특성상 빈번한 상해 발생으로 인한 특화된 복지의 필요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

## 나. 상해진료 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전문무용수가 공연활동 중 상해 시 정신적 상담 및 금전적 지원을 통하여 공연활동에 조기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구성
  - 상해 진료비 할인: 재활관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진료비를 할인
  - 상해 진료비 지원: 진료비의 비급여 부분에 한하여 전문무용수의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 2) 사업 특성

구분	종류	제도	특징	상해 진료 지원사업	적용범위
소득 보장제도	사회보험	산재보험	·피용자를 대상 ·임금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징수 (사업주 전액 부담)	·전문무용수대상 ·공연활동 중 발생한 상해	·전문무용수의 공연활동을 일반 근로자의 '근로 행위'로 인정하고 공연활동 중 상해에 한하여 지원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일반 사업장'은 보험료 전액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상해 진료 지원사업'에서는 정부를 관계상 '일반 사업장'으로 인식
	공적부조	의료급여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 ·정부 예산에서 전액 지원	·열악한 무용수 재정상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 ·정액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반면 급여수준이 낮음 ·전문무용수 경력에 따라 비급여 부분에 한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의 정액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건강보험	·직장 및 자영업자로 구분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징수 (직장: 사업주 1/2 본인 1/2부담, 지역: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 ·현재 통합 진행중	·국공립단체소속 및 민간단체, 독립무용수로 구분 ·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 ·상해 상담서비스 지원 (예정)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은 이중 지원의 문제와 무용수 상해 대부분이 비급여항목 비율이 높은 재활상해이기때문 ·단 건강보험과는 달리 기금을 통한 보험형식이 아닌 급여형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는 달리 본인부담금 비율을 지원금 비율보다 높여 전문무용수 경력에 따라 90%에서 50%로 차등지원
금융지원	융자 및 보증		·생업자금 및 주택 관련 자금 대출 ·기초생활보장 기금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진료비 할인	·융자 및 보증을 통한 금융관련 지원과는 달리 재활관련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한 할인의 방식으로 간접 지원

\* 정갑영(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2-1>를 기초로 재구성

- '상해 진료 지원사업'은 현재 실시 중인 건강보험을 기초로 무용인을 위한 특화된 의료 지원을 목표로 하며, 현재의 여러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차용을 통해 효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둠

## 다. 직업전환재교육 지원사업

- '2007전문무용수실태조사' 결과 전문무용수의 은퇴시기를 발레는 '74.5%가 30대 은퇴', 전체 무용수 평균은 '30대 은퇴' 38.4%, '40대 은퇴' 25.2%로 나타나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연령이 현저히 낮음
- 고학력의 고급전문인력의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 필요성에는 '83.4%가 필요하다'고 응답, 직업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는 '97.0%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즉 직업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현황(3%)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는 직업전환을 위한 카운슬링을 받아 전문무용수 스스로 경력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정보 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받는 영국의 총체적 직업전환 시스템 등 유럽 무용정책기관의 사례를 본받아야 하겠으나, 무용계의 현실상 직업전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단기적으로 무용예술 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을 선정한 교육비 지원 방식을 우선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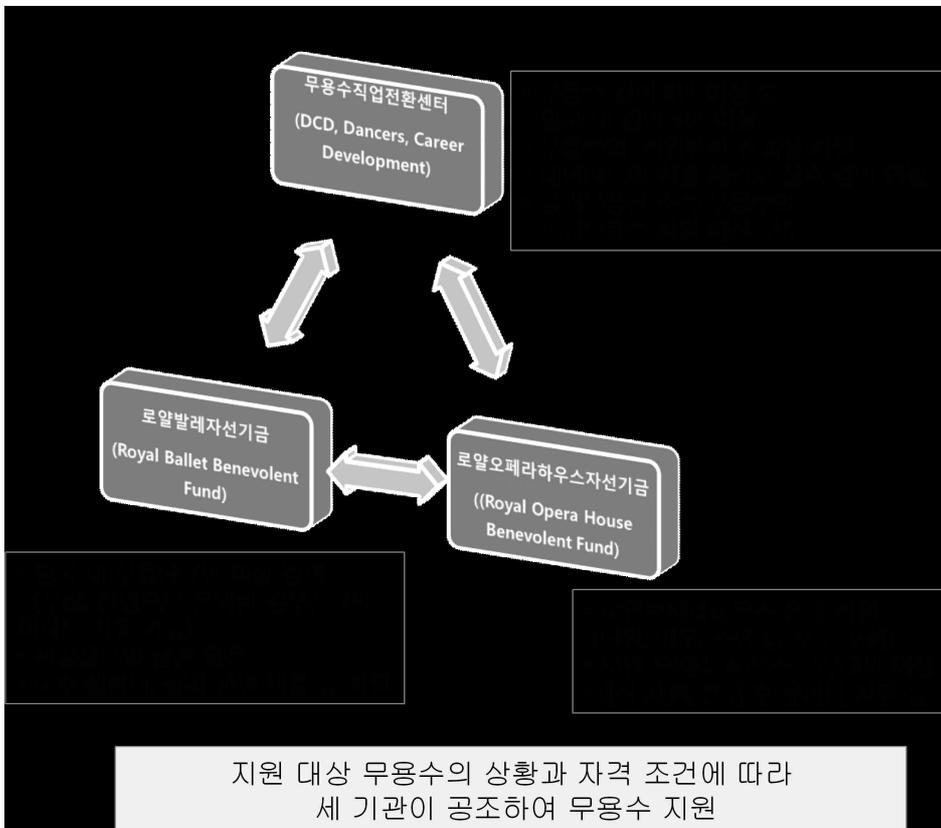
### ※ 사업구성

직업전환재교육 지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연초 4개 기관(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서울아트스쿨, 클리닉강사양성, ABC강사양성)에서 실시하던 교육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무용전문 스텝인력 양성', 'Body Capability', '클리닉 강사 양성'으로 이루어진 총 14개 기관 57개 프로그램의 위탁교육과 함께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라. 영국 사례

- 36년 역사의 영국 무용수지원센터(Dancers' Career Development)는 무용수직업전환기관으로서 교육 및 경력 카운슬링, 심리 상담과 워크숍에서부터 직업전환 및 창업 지원비 지급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문무용수가 DCD에서 창업자금을 비롯한 직업전환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직업전환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DCD는 그 계획에 맞추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함

- 영국의 DCD, RBBF, ROHBF 등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며 무용수 은퇴 후 직업전환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예를 들어 로얄 오페라발레단 출신 무용수가 10년 이상 활동을 한 후 30대 후반에 부상으로 인한 퇴직을 했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 및 퇴직금 이외에 DCD에서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원, ROHBF에서도 퇴직 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예: 휴가비 지원도 가능)을 받을 수 있고, RBBF에서는 상해진료지원금(예: 휠체어 제공에서 실내 건축비용까지)을 지원받으며, 70대 이후에는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개의 지원기관에서 한 무용수를 놓고 앞으로 놓여질 상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지속적인 지원이 평생 이루어진다는 의미임. 단 매년 각 이사회에서 자격심사를 철저히 시행함



### 3. 결론 및 제언

- 현재 본 센터에서 운영중인 직업전환재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 장르로 확대 실시한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 풀(pool) 운영 방안과 의료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일부 사업운영 위탁은 긍정적인
- 공연 수입으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 역시 공통된 실정이며 유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미국은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 공연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책이 추가 강구되어야 함. 재원은 메세나에 의한 기업 기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 조금으로 충당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재원의 확대로 무용수에게 보수가 상시적으로 지급되면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자동 가입으로 근본적인 복지문제 해결이 가능함
- 공연 중 상해로 인해 치료중이거나 직업전환 교육 중 공연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실업수당 지원 필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확보 대책마련
- 현재 우리나라 예술인의 81.5%가 생계를 위해 예술분야 이외의 직업을 부업으로 겸직하고 있음(2007, 문화예술인실태) 이미 문화선진국에서는 법률로 예술인을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동시에 직업 예술인이 가진 창작활동의 특수성(불안정한 수입, 활동의 비연속성, 임금근로자와의 차별적 활동 행태 등)을 고려한 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나호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시인)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인 예술인을 위한 복지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린 예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가난과 소외가 예술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는 희망과 함께 公約이 空約으로 증발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예술인의 복지 향상은 전 국가적, 전 국민적 합의와 후원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난제이다.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를 복지제도에 편입시킬 것 인가 하는 문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시된 예술인 공제회에 예술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왜도난마의 해답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제회 설립에 관련된 연구 성과는 대다수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를테면 공제회 설립 시 즉시 가입보다는 추이를 보아가며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등, 공제회의 기능을 노후생활 안정, 발병 시 대처, 주거 생활 안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든가 하는 자료들은 그동안의 연구가 충실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전 국가적, 전 국민적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과정의 원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 간의 조정과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사업 전체가 무산되거나 유아무야되는 사례를 숭하게 보아 왔다.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단속적 활동에 의한

부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예술인들이 납입할 수 있는 납입금 규모가 턱없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 각 부처 간의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민간단체, 개인들의 경제적 후원은 공제회의 성공적 궤도 진입에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메세나 활동이나 기업들의 기부는 예술인의 입장보다는 그들의 사회적 이익에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예술인과 기업, 또는 개인이 win-win 하는 사례를 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향유하며 그에 따라 예술인들의 공지와 권위를 보살펴 주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으로 예술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인의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름 아닌 일반 대중들의 존경과 격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예술인들의 공제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기여는 국가와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예상컨대, 예술인 공제회는 안정적 직업과 수입을 보장받는 예술인들의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구태여 그들은 예술인 공제회에 가입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예술인으로서 동업자의 파트너십으로써 공제회에 참여하거나 기부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예술인 공제회는 사학연금이나 군인공제회와 같이 월정 수입을 보장받고 비교적 적지 않은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공제회 활동이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제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공제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예술인 공제회 설립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이 땅의 대다수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마련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지원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환영함
  - 지난 시절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sup>1)</sup>,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으로까지 제시되었던 문제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진전될 것으로 기대
  -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차제에 예술인의 존재와 사회적 예우의 필요성, 그리고 혜택의 대상인 예술인 스스로의 자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

## ○ 정책의 방향

- 예술인에게 다른 분야 종사자 (혹은 일반 국민) 보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의해 4대 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보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 ○ 정책의 근거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고양은 공공정책의 영역
- 공공정책은 차별과 불이익 해소가 우선
- 예술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일
- 예술과 예술작품의 가치를 인정하여 특별하게 대우하는 일

1)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새예술정책>의 4대 기본방향 중 3. 예술의 자생력 신장을 위한 14대 추진과제 중 8.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가 제시된 적이 있음

- 지위 고양을 위한 예술인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
-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 정책을 강구하는 일

○ 예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 정책은 직능별 복지 정책

- 직능별 복지 정책의 성격은 자조(自助) 노력의 제도화와 지원
- 예술인 스스로에 의한 노력을 지원할 필요 (공제회, 금고)
- 공제회는 예술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입하여 일정한 부담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생활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비해 특혜를 받는 것 같은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 정책의 대상

- 공제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경우 가입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할 텐데 토론자는 1980년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근거하여 스스로를 예술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현실적으로 공제회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립되는 재원이 많아야 하므로 다수의 회원이 가입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타인이 예술가의 업적(수월성)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예술가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은 예술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또한 자칫 가입대상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될 가능성도 있음
  - ※1953. 4 ‘문화인등록령’ 공포의 교훈
- 다만 복지 제도의 근본 취지가 빈곤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있으므로 소득이 일정한 범위를 넘는 경우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 전문/아미추어, 순수예술/대중예술을 구분함이 없이, 창작, 비평/기획, 스탭 등 예술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가입대상을 가능한 한 넓혀야 할 것임

○ 공제회의 운영 방안

- 예술인들의 의견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초기 필요 자원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의미
- 그를 통해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적은 부담으로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공제회의 운영 기구는 최소화하여 가능한한 재원이 복지 혜택에 집중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노후연금이나 상해와 같은 소득 중단에 대처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과 함께, 자녀 양육이나 주거 안정과 같은 부분에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도 필요
- 공제부금 납부를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니버설 공제 모델이 적합할 것임

- 공제회 운영 이외에 발표자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 예술인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

○ 공제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 정부의 시혜가 아닌 예술인 스스로의 자조 노력의 성과가 되어야 함

○ 예술인도 국민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적극 참여할 필요

-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 예술인은 '자활능력 있는' 빈민으로서 같은 계층의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증진되면 같이 혜택을 입게 됨

- 준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필요
- 노동으로서의 예술활동에 대한 자기 인식을 통해 조합활동이나 최저임금 향상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

최성규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화가)

## 예술인복지모델 도입을 위한 토론 질의서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된 이 논의가 아직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술인공제회에 대한 논의는 예술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예술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이 총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제시되었으나, 문화생산이 자본생산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특성에 대한 안목의 부족으로 오히려 작가들에게 이중고를 겪게 함으로써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창작활동을 근로활동으로 규정하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가들에게 공제금 납부방식을 고집할 경우에 과거와 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문화생산자에게 기금을 각출하여 그 자금으로 공제회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또다시 공론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문화생산이 자본 생산과 동일하다는 가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후원금은 물론이며, 미술가<sup>1)</sup>에게는 공제료를 작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 이를 위해서 조형물 설치에 준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함.
- 두 번째, 창작물의 소통 확산을 위한 전시도록 제작비나 대관료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 아트페어 형식의 전시를 제외한 순수 창작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 실제로 작가들의 생활경비와 함께 전시발표 경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 세 번째, 현재 지자체별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작가들의 사회적 수요가 상향되었으나 관련단체(미술협회 등) 주도로 커리어 향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념적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더 많은 지원 상황이 필요하겠으나 예술인 공제사업과 관련한 미술인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첫 번째에 대한 지원이라 사료됩니다.

---

1) 작가에 대한 규정은 작가생활 종사 기간과 작품 활동실적을 규정을 정해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름.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추진 예정인 예술인 복지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서 문화예술인의 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lt;문화예술진흥법 현행 조항&gt;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이런 규정 등에 따라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는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복지와 관련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에 일반적 조항으로 국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의 마련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제3조 (시책과 권장)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하여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과 아울러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도 포함할 계획임.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규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아울러 발제내용에 포함된 예술인 복지모델 도입을 위하여 동 모델이 단순한 상조회적 성격을 넘어서는 한편, 공제사업의 합법성 및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공제 성격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인 공제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운영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신설 조항(안)>

제39조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제사업본부를 둔다.

③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문화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 ①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공제사업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본부에 문화예술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울러 공제에의 가입,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신설 조항(안)>

제40조 (문화예술인공제의 가입) ①문화예술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하되, 구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예술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1조 (문화예술인공제 사업) 문화예술인공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2.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신설 조항(안)>

제42조 (자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인공제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예술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금
4. 문화예술인공제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나 재단법인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와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인공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공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권의 보호, 준비금의 적립,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및 타기관에 자료를 요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임.

<신설 조항(안)>

제44조 (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5조 (준비금의 적립) 위원회는 결산기마다 문화예술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문화예술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자료의 요청) ①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하여 7월중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임. 관계부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8월 중 의뢰할 계획임. 이러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9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수적일 것임. 향후 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